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9
----------	------

발의연월일 : 2024. 2. 27.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신동윤 의원, 김은영 의원

1. 제안이유

달성군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하여 의무감 부여 및 행정 혜택을 제공하고, 관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지위 신설(안 제3조)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제14항~제15항)

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문화가족의 지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하면서”로,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을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를 사용한”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5호 중 “입은” 을 “당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고” 를 “높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6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존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 지원

15. 결혼이민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6조(중전의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를 “때는 그렇지 않다”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관기관” 을 “관계기관” 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항 중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을 “없을 때 는 부위원장” 으로,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을 “없을 때는 위원 장” 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있을 경우에” 를 “있으면” 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를 “협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2항 단서 중 “그 직무” 를 “자신의 직무” 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참석할 때는 그 령지 않다” 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경우에는” 을 “발생하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을 “장기치료가 필요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 을 “등으로” 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군 소속이 아닌 위원의 참석에 대해서”
를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 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4조” 를 “제5조” 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 를 “제5조” 로, “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
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다문화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제1호--. 2. ----- 법 제2조 제2호-----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제3조(다문화가족의 지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추진하면서 -----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7. (생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 13. (생략)

<신설>

<신설>

14. (생략)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

-----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를 사용한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당한

6.·7. (현행과 같음)

8. -----

----- 높임-----

9. ~ 13. (현행과 같음)

14.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존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 지원

15. 결혼이민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4. 5. (생략)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 때는 그렇지 않다.

1. 2. (현행과 같음)

3. -----
----- 관계기관-----

4.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을 때는 부위원장-----

----- 없을 때는 위원장-----
-----.

제9조(회의) ① -----

----- 있으면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생략)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 6. (생략)

제12조(위원수당 및 실비변상) 군 소속이 아닌 위원의 참석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자신의 직무--- 참석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
----- 발생
하면 -----
-----.

1. (현행과 같음)
2. ----- 장기치료가 필요한 -----

3. ----- 등으로 -----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수당 및 실비변상)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제5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① --- 제5조-----
----- 필요한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2020.5.19. 일부 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